『'24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』

# 특임(구조·전술·EOD) 실기시험 유의사항 및 평가방법

## 1. 공통 유의사항

○ 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(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번호가 표기된 여권)만 인정)하여 주시기 바라며, 미지참자는 응시불가(지연)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**집결시간* 미준수자는 응시가 불가**합니다. (이후 종목도 응시불가)

* 집결시간은 공지된 집결지 도착(응시자 등록 등)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○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을 위해 **특정소속**(출신 군, 학원, 학교 등)**을 나타내는 의류 및 일체의 장신구**(반지, 목걸이, 팔지, 귀걸이 등) 착용을 **금지**합니다.

* 금지된 의류와 장신구 착용 시 현장에서 제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,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한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기록 참고용 손목시계는 착용이 가능합니다.

○ 실기시험 현장의 불가피한 사정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방법·집결시간·시험순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변경사항은 현장에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 공동으로 안내되며, 응시자는 현장 안내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.

○ 「당해시험 무효」 또는 「전체종목 실격」이라는 안내 및 고지가 없는 「실격」 처리는 각 「종목 '0'점」 처리를 말하며, 다음 종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총점의 60% 미만 득점자는 총점과락)

○ 각 종목별 실격 및 기권 시 해당 종목은 '0점'을 부여하고, 종목별 과락(0점, 시간 초과 등)이 될 경우 또는 시험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관계자는 응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종목 평가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목은 '0점'으로 처리합니다.

○ 실기 종목 별 평가표에 기재된 최저점수 미만 기록은 '0점' 처리합니다.

※ 예) ① 턱걸이 12개가 최저점 7점이므로, 11개 기록 시는 '0'점 처리

② 구조수영(42m) 55초가 최저점 7점이므로, 감점 1점 시 6점이 아닌 '0'점 처리

○ 종목별 실격 및 기권한 경우는 다음 종목 응시가 가능하나, 한 종목이라도 미응시한 경우는 다음 종목부터 응시가 불가합니다.

○ 응시자가 규정된 시험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, 현장에서 사전에 안내된 금지된 방법으로 응시할 경우 실격처리합니다.

○ 응시자 개인별 종목평가는 1회에 한하며, 재측정은 불가합니다.

* 단,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, 응시자가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(장비불량, 他 응시자의 방해 등)이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험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재측정 가능

○ (육상)체력 평가시 스파이크화 및 부상 방지용 장갑(일명 턱걸이 장갑 스트랩 등은 금지), 송진가루는 사용이 가능합니다. (필요 시 개별준비)

○ 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 약물*을 사용하거나, 부정한 방법**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향후 5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는 등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*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「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-1호 (2019.1.8.)」 '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'의총 24종 동화작용제 7종, 이뇨제 3종, 흥분제 3종, 마약류 11종

** 부력 수영복 착용, 몸 속 공기 주입, 사용금지 물품 사용 등 공정한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관계자가 직접 신체를 만지거나 특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

○ 응시자는 종목별 시험 종료 시 감독관(측정관)과 함께 반드시 본인 기록과 평가표 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.

○ 시험 기간 중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부정약물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○ 시험장에는 응시자만 출입이 가능하며, 응시자를 제외한 일반인(가족, 지인, 학원 관계자 등)은 출입 및 참관은 불가합니다.

○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사전 허가된 내용 외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하며,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당일 시험이 종료된 응시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해 시험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즉시 시험장을 떠나야 합니다.

○ 시험관계자의 공정한 시험진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시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즉시 **퇴장조치를** 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체검사 중 문신을 감추기 위해 「**문신 커버스프레이, BB크림, 셀프태닝크림**」을 덧바르는 등 고의로 은닉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,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되고, **5년간 동 영에 따른 시험 응시가 제한**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감점 및 실격 사유, 유의사항 등은 모든 응시자들에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오니 응시자들께서는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구조·특공(전술·EOD) 분야는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
○ 필기시험 대상자(실기시험 합격자) 및 시험정보는 해양경찰청(응시 지방청)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포털(https://career.gosi.kr)게재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, 장소,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○ 채용시험 응시자는 해당 공고문 및 평가방법,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모두 숙지·인용(認容)한 후 응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 2. 턱걸이, 왕복달리기, 2km달리기 평가방법

### □ 턱걸이

○ 시험관계자의 준비신호에 따라 팔과 몸을 일자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응시자가 준비가 완료되면 “시작하겠습니다.” 등으로 시작 신호 후 시작하고, 그때부터 측정이 시작됩니다.

○ 턱이 철봉 위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고 목만 들어 철봉 위로 올리는 경우에는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○ 반동(배치기)은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각 1회 실시 후 팔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.

○ 철봉을 잡고 처음 시작할 때 미끄러지는* 경우에 한하여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.

* 손바닥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·송진가루만 사용허가, 필요 시 응시자가 개별 준비

** 단, 스프레이식 접착제 등은 사용 금지, **사용 시 실격처리(응시방법의 임의변경)**

**[무효사유]** * 감독관은 횟수 무효 시 **‘무효’**라고 큰소리로 고지

- 팔(팔꿈치)을 완전히 펴지 않고 올라간 경우<해당 횟수 무효>
- 턱이 철봉위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고 목을 들어 철봉에 닿는 경우<해당 횟수 무효>
- 한쪽 팔을 철봉에서 분리하여 늘어뜨려 휴식을 취하는 경우 1차 경고 후 2차 경고 時 평가 중지 이전 횟수까지만 인정
- 응시자가 철봉 지지대에 다리를 걸어 쉬는 등 ‘턱걸이’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즉시 중지 처리하고 중지 전 횟수까지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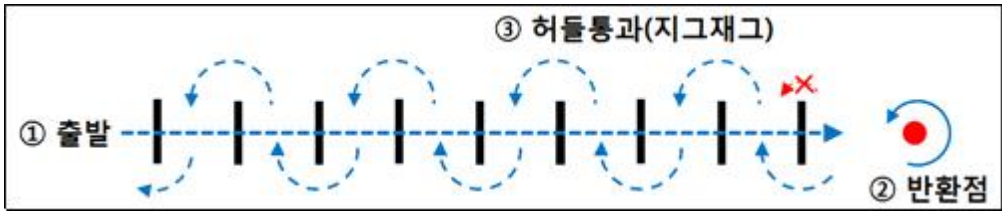
**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**

- 허용되지 않은 장비(스프레이식 접착제 등)를 사용하거나 응시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평가에 필요한 응시자의 정확한 능력 측정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실격처리

* 장갑은 손바닥 부상방지용으로만 허용, 고리형태로 철봉에 끼우는 장치가 된 장갑, 헬스 스트랩(그립 밴드, 리프팅 밴드, 손목보호대 등 포함) 등 근력 보조 가능 제품 사용불가

## □ 왕복 달리기(100m 허들)

ㅇ 허들높이는 914mm로 하고, 허들은 10m 간격으로 9개를 설치합니다.




ㅇ ① 출발 후 허들을 넘어 달리고, ② 반환점 통과 후 출발선으로 복귀 시, ③ 반환점과 첫 번째 허들 사이부터 지그재그로 돌아옵니다.

* 상기 그림과 같이 반환점 통과(회전 방향은 무방함) 후 허들을 지그재그로 통과

ㅇ 허들은 중앙으로 넘고, 양발이 모두 넘어 가야합니다.

ㅇ 전자계측기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, 준비구령 이후 계측기 신호음에 따라 출발하며, 시간은 전자계측기에 측정된 기록으로 평가합니다.

* 불가피하게 수기로 측정할 경우, 출발신호는 응시자보다 5m가량 앞서 깃발로 지면에서 하늘로 들어 신호(호각 소리를 병행할 수 있음)함. 이 때 깃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출발 및 계측하고, 반환점을 돌아 출발선을 통과

ㅇ 출발선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스탠딩 자세로 출발하며, 부정 출발 시 통제에 따라 재출발 하여야 합니다.

ㅇ 허들을 넘는 도중 발에 걸려 허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이나 발 등으로 고의로 허들을 넘어뜨리고 달려서는 안 됩니다.

ㅇ 달리는 도중 허들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응시자의 요구에 따라 휴식을 취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.

| [감점사유] |
| --- |
| ‣ 허들의 바를 벗어나서 넘거나, 허들을 규정에 따라 넘지 않은 경우 각 개소 당 - 2점<br>‣ 반환점부터 지그재그 허들 통과방법 미준수 시 각 개소 당 - 2점 |
| 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 |
| ‣ 출발오류(출발신호에도 미출발) 및 부정출발 시 1회는 경고, 2회는 실격<br>‣ 재 측정 기회는 1회에 한 함. 예) 1회 부정출발 후, 도중에 넘어지는 경우 재측정 불가<br>‣ 허들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달리는 경우 실격 |

## □ 2km 달리기

ㅇ 출발신호는 준비구령 다음 호각 1회(삐) 또는 깃발을 들어 신호하여 출발하도록 합니다.(6~8명씩 출발, 조 구성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)

ㅇ 출발선을 밟지 않고 스탠딩 자세로 출발하며, 부정 출발 시 호각 2회(삐 - 삐) 신호로 전체 중지 후 다시 출발합니다.

ㅇ 부정출발 및 최 좌측 라인 안쪽으로 달리는 경우 1회 경고 후, 2회 경고 시 **실격처리** 합니다. (0점 처리)

ㅇ 기록은 개인별로 담당하는 시험감독관의 기록으로만 인정합니다.

ㅇ 달리는 도중에 타응시자를 고의로 밀거나, 추월 시 타응시자 코스 안쪽으로 추월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및 시험을 방해*하는 행위를 한 경우 **실격처리** 합니다. (0점 처리)

ㅇ 2km 지점 통과 후 타 응시자의 안전과 시험진행에 방해가 없도록 주의하며 즉시 트랙을 벗어나야 하고, 트랙을 벗어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트랙을 벗어나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**실격처리** 합니다. (0점 처리)

## 3. 잠수능력 측정 - 중성부력, 수중 잠수장비 탈·부착능력

### □ 잠수장비 결합 및 점검

○ 개인장비는 허용되지 않으며, 반드시 제공되는 장비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* 웨이트벨트는 8kg까지 허용하며, 공기통은 압력이 **110 bar 이하만 교체**
**(웨이트벨트는 반드시 착용. BC자켓 내에 웨이트를 넣어 부력 조절은 불가)**

** 제공장비 : 슈트, BC자켓, 핀, 웨이트, 마스크, 공기통, 레귤레이터

○ **응시자 간 장비 착용에 대한 조언 및 대리 장착을 해주는 경우** 등은 **쌍방 모두가 부정행위**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**응시자는 장비를 충분히 점검***하고, 정확히 장착한 후 시험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**장비장착 상태를 확인**** 받습니다.

* 시험진행 상 필요 시 사전고지 후 장비장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** 응시자가 선별한 장비와 조작 불량으로 인한 평가결과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○ 잠수장비 점검(평가)을 받은 이후 잠수장비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.

○ 잠수장비 장착 불량 및 미숙 등은 **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**을 위해 **잠수 종목(중성부력, 베일아웃) 응시가 불가합니다. ('0'점 처리)**

### □ 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(약칭 : 중성부력)

○ 잠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2분간 중성부력 유지 능력을 평가합니다.

○ 준비완료 후 앉은 자세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입수를 시작합니다.

○ 입수 후 1분* 내 사각구조물에 들어가 중성부력 평가 준비(부력조절 가능)를 완료**해야 하며, 시간 경과 후 즉시 측정이 시작됩니다.

* 입수 후 50초 경과 시 지시등이 2회 점멸되며 「평가시작 10초 전」 고지

** 공기통까지 구조물 내에 위치시켜야 하며 손은 전면을 향해 깍지 자세를 유지하고(손과 팔로 위치 및 부력조절 행위는 금지), 킥에 대한 제한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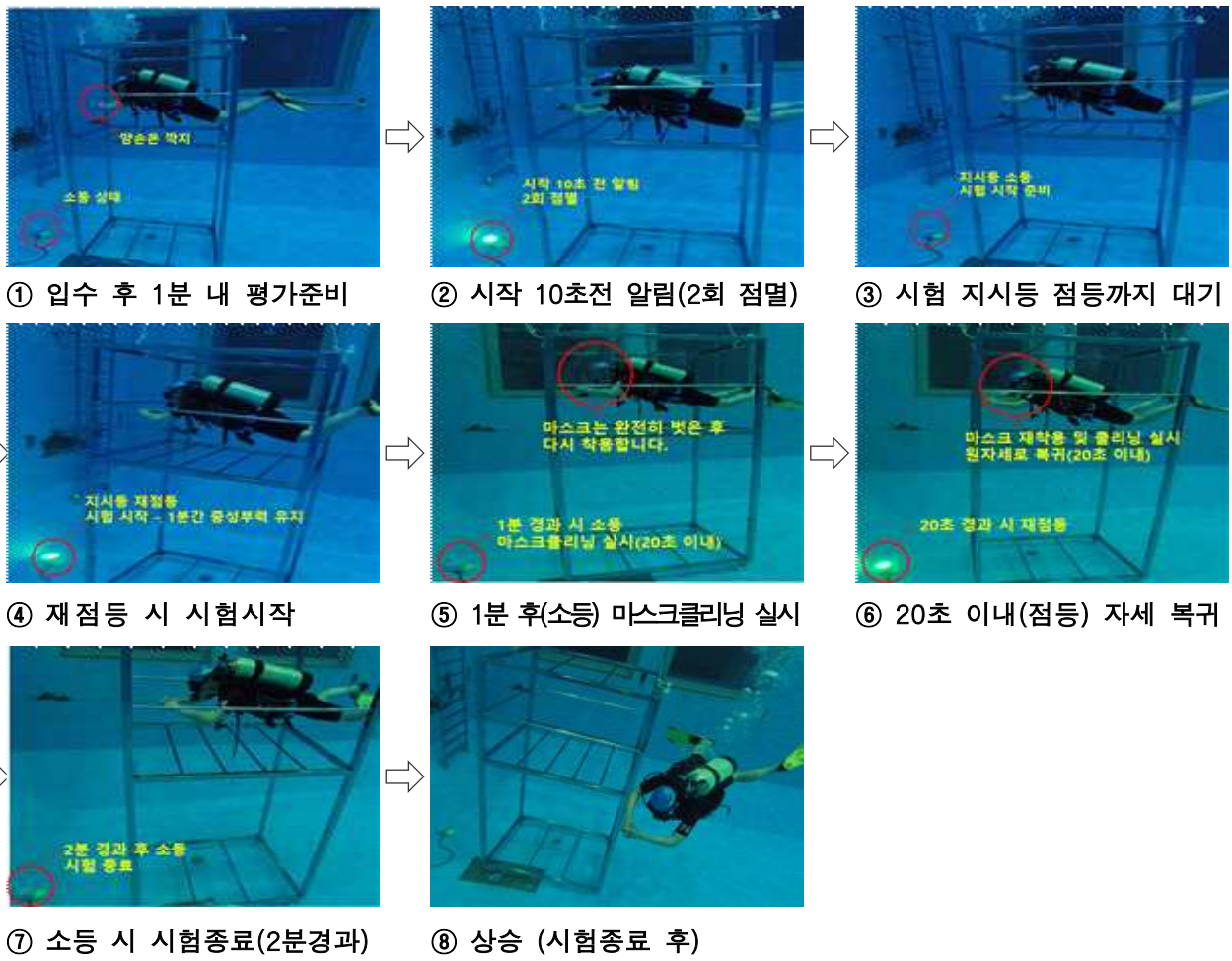
○ 1분 후 지시등이 점등 되면, 중성부력 기록측정이 시작됩니다.

○ 평가시작 1분 후 지시등이 꺼지면 마스크 전체가 머리에서 완전히 분리되도록 벗고 재착용한 후 20초* 내 마스크클리닝(중성부력은 유지)을 실시하고 원자세로 복귀해야 합니다.

* 지시등이 소등된 후 20초가 경과하면 재점등 함

○ 지시등 소등(2분) 시 평가 종료. 수면으로 상승하여 벽에 양손(**마스크 및 착용장비 촉수 금지 : 실격사유**) 대고 감독관의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합니다. *** 중성부력 종료 후 장비조정 없이 베일아웃 평가**

## ※ 시험진행 개요도




① 입수 후 1분 내 평가준비 ② 시작 10초전 알림(2회 점멸) ③ 시험 지시등 점등까지 대기

④ 재점등 시 시험시작 ⑤ 1분 후(소등) 마스크클리닝 실시 ⑥ 20초 이내(점등) 자세 복귀

⑦ 소등 시 시험종료(2분경과) ⑧ 상승 (시험종료 후)

[감점사유] : 감점사유 발생시 수중감독관이 별도 불빛으로 고지*

* **감점사유에 대한 고지의 목적**은 수험생의 감점사유에 대한 미인지로 인한 지속적 감점을 예방하기 위한 **보조적 역할**로, **감점 사실과 수험생의 인지는 무관**함.

- 시험시작 이후 종료까지 착용장비* 또는 신체 일부(깍지를 낀 손 포함)가 이동한계 범위**(1.5m×1.1m×1.1.m) 밖으로 넘어서거나 구조물 접촉 시 각 행위 당 –1점
  * 게이지가 아래로 늘어져 구조물 바닥에 닿는 경우는 제외
  ** 하반신에 대한 평가는 공기통 일부가 구조물을 벗어날 경우 감점
- 계속적인 이동한계 범위 초과 및 구조물 접촉 시 3초 경과마다 -1점
- 물안경의 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거나, 마스크 끈 꼬임(마스크클리닝 불량) - 1점
- 마스크클리닝 시간 외 깍지를 풀어 양 손이 떨어질 경우 즉시 시험 정지, 측정된 시간까지만 점수 인정(감점요소를 모두 계산하여 점수 기록)

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

- 평가전 사전 공지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실격
- 시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구조물(케이지)을 손으로 잡을 경우 실격
- 20초 내 마스크클리닝 종료 후 원자세(전면 손깍지) 복귀가 불가할 경우 실격

※ 공통사항 : 시험평가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임의적 시험방법의 변경은 실격처리

## □ 수중 잠수장비 탈·부착능력(약칭 : 베일아웃)

○ 중성부력 시 사용한 장비는 교체 및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.

○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수없이 하잠한 후 30초 이내에 시작위치*로 이동하여 시작 지시 등이 점등될 때까지 신호를 기다립니다.

* 수중에 있는 시작과 종료 위치는 동일하며, 구조물(케틀 벨) 등으로 표시

○ 장비는 중성부력 측정 시 착용한 상태 그대로 평가에 임해야 하며, 하잠은 헤드-업(Head-up)형식으로 하되 하잠 시 BC자켓의 공기 배출을 위한 디플레이터 호스(버튼)와 이퀄라이징(내외압 평형)을 위한 마스크 촉수를 제외하고 다른 장비를 만지는 행위는 금지합니다.

○ 하잠 후 시작위치로 이동하여 준비자세(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손은 만세 자세로 머리 위로 올린 자세)를 갖춘 후 시작신호*(하잠 후 30초 경과 시 점등)를 기다립니다.

* '중성부력'과 동일한 지시등이 점등되면 시작. 준비를 알리는 별도 점등은 없음.

○ 지시등의 점등과 동시에 측정은 시작되며, 정해진 시간(30초) 내에 준비자세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 무릎이 반드시 바닥에 닿은 후 장비탈의를 시작*해야 합니다.

* 양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고 장비탈의를 시작할 경우는 '시험의 임의변경'으로 실격

○ **슈트를 제외한 제공된 모든 장비**는 양성부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중에서 뜨지 않도록 바닥에 거치하며, 공기통 밸브는 반드시 잠그고 퍼지버튼을 눌러 호흡기 내부 공기를 완전 배출 후 상승합니다.

○ 수중에서 최종으로 장비 착용을 완료하고 응시자 앞에 종료(시작) 지점(케틀벨 등으로 표시)을 터치*한 순간까지의 기록을 측정합니다.

* 응시자는 수면 상에서 터치 순간이 확인이 가능(거수 등)하도록 하여야 함

○ 시험 종료 후 수면으로 상승하여 벽에 양손을 댄 상태를 유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릅니다. (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착용장비 촉수 엄금)

**※ 시험진행 개요도**




① 시작 → 시험준비(30초)




② 시작신호 점등, 시험시작




③ 장수장비 해체




④ 상승




⑤ 하강(맨몸입수)




⑥ 장비 재착용




⑦ 착용완료(터치로 계측종료)




⑧ 종료 후 장비 촉수없이 상승




⑨ 대기(지시 전 장비 촉수 불가)

[감점사유]

- 시작신호가 점등될 때까지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은 경우 - 2점
- 입수 후 슈트를 제외한 착용장비를 완전히 벗지 않고 부상한 경우 개소별 –2점
  ※ 물안경을 벗지 않은 경우는 실격처리(시험 방법의 임의변경으로 간주)
- 버클·핀 미착용 등 장비가 정확하고, 완전한 착용이 이뤄지지 않은 개소별 - 2점
- 물안경의 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경우(마스크 클리닝 불량) - 1점
- 공기통 밸브 잠김 불량 및 호흡기 호스 등 내부공기 완전 배출 불량 - 1점
- 마스크 끈, 호흡기, 어깨 끈 등 단순 끈 꼬임(접힘) 발생 시 개소별 – 0.5점

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

- 응시자가 착용완료를 표시한 후부터 시험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착용 장비에 손을 대는 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실격처리
- 시험평가 중 공지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실격처리

※ 공통사항 : 시험평가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임의적 시험방법의 변경은 실격처리
(예 : 착용장비를 벗고 부상할 때, 물안경을 쓴 채로 부상하는 행위 등)

## 4. 구조능력 측정 – 4kg 착용 손들고 떠 있기, 구조수영(42m)

### □ 중량 4kg(웨이트 벨트) 착용 손들고 떠 있기

○ 중량물(웨이트 벨트)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걸쳐도 상관없습니다.

○ 시작은 시험관계자의 준비구령 다음 응시자의 '시작 신호'에 따라 신체가 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측정을 시작합니다.

○ 떠 있는 상태는 손목* 및 턱선과 양쪽 귀를 기준으로 얼굴 전체가 수면위로 나와야 합니다.

* 손목은 평가시 착용하는 팔찌를 기준선으로 판단하며, 얼굴전체 침수 등 응시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

○ 손을 들고 발로만 상태를 유지하며 제한범위(2m X 3m)안에서 회전 없이 제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떠 있어야 합니다.

* 제자리에서 좌·우로 90°이상 회전하거나 제한라인에 걸치는 경우, 1차 경고 후 2차 경고 시 시험관계자의 중지 구령에 따라 그때까지의 기록만 인정

[감점사유]

- 손목 및 턱선, 귀 중 어느 한 부위가 물에 잠길 경우 1회 경고 이후 각 위반 행위 당 -1점
- 손목 및 턱선, 귀의 침수 감점 사유로 -5점이 될 경우 즉시 중지하고 그 때까지의 기록만 인정 (응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)

※ 개인 기록 참고용 손목시계는 착용가능하나, 측정용 팔찌착용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됨.

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

-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력 수영복 / 몸 속 기체주입 / 기타용품 착용 등 부정행위 시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등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제38조에 따라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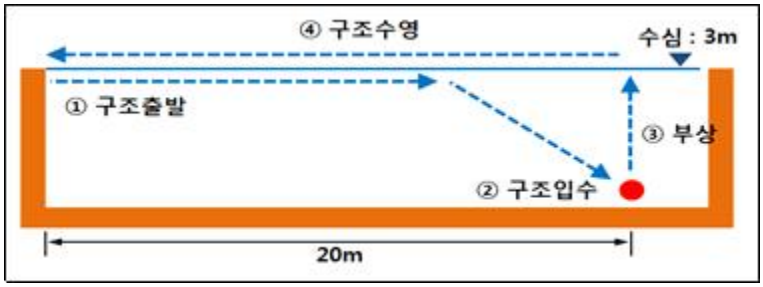
*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감독관이 직접적인 신체접촉 또는 특정자세를 요구할 수 있음.

## ※ 시험진행 참고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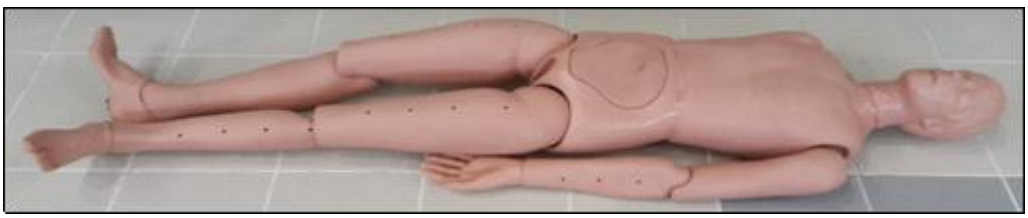
## □ 구조수영(42m)

○ 양방향에서 2명이 각각의 레인에서 출발 및 계측을 실시합니다.




* 수영장은 길이 21m, 수심 3m의 시설을 이용합니다.

** 구조대상(마네킹)의 다리길이 등을 감안 21m수영장 벽에 등을 기대도록 설치



※ 참고사항 : 마네킹 신장 163cm, 육상 무게 18kg 기준

○ 응시자는 배정된 레인에서 수영하여야 하며 평가 중 레인을 이탈하거나 他응시자를 방해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.

○ 호각 등의 출발신호*로 출발할 경우, 부정 출발 시 호각 신호로 중지하고 다시 출발하며, 부정출발을 2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.

* 출발신호는 현장에서 타 종목 평가진행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 가능

○ 전방 20m, 수심 3m 지점에 구조대상(마네킹)을 구조하여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계측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.(정해진 레인 이탈 시 실격)

○ 출발자세는 입수한 상태에서 벽을 한손으로 집고 계측자의 출발신호에 따라 벽을 차며 출발*, 15m 지점에서 구조입수

○ 구조영법* 시행 시 익수자가 물에 가라앉기 전 위치를 가정하여 입수 직전까지 정면을 바라보고 영법을 시행해야 합니다

* 구조영법은 헤드업 자유형(크롤영법)으로 하며, 잠영은 불가. 영법위반 시 실격

○ 수면아래 앉아있는 구조대상(마네킹)을 **구조하는 즉시 수면 위로 부상***(수직부상이 아니어도 무방)하며, 구조대상(마네킹)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출발지점으로 돌아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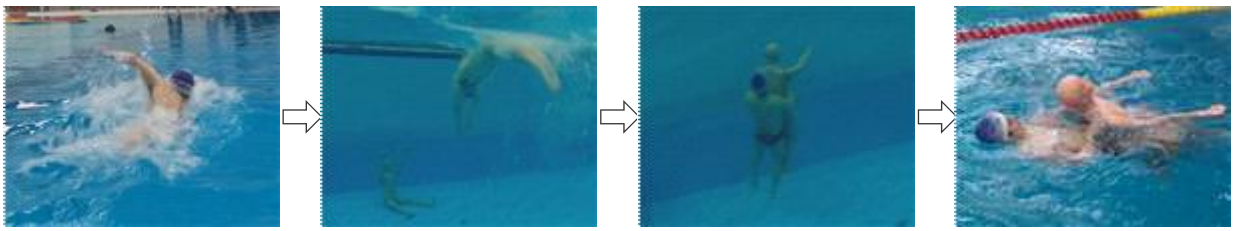
* 즉시 부상 : 구조대상을 구조 후 부상 위치는 5m(지정된 입수지점)를 벗어날 수 없음 (위반 시 정해진 영법 위반으로 간주, 실격처리)

○ 구조대상(마네킹)의 운반은 구조영법 중 '양손 겨드랑이 끌기'를 원칙으로 하며, 발차기의 제한은 없습니다.

○ 구조대상(마네킹) 얼굴은 수면 부상과 함께 반드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고, 구조자 및 구조대상(마네킹)의 얼굴 침수되어서는 안됩니다.

○ 종료지점에서 손이나 신체 일부가 **터치되는 순간**까지의 기록을 측정합니다.

**※ 시험진행 개요도**



① 구조출발 (헤드업 크롤영법) ② 구조입수 ③ 부상 ④ 구조수영

| [감점사유] |
| --- |
| ▸ 구조대상(마네킹) 운반 시 구조자 및 구조대상의 얼굴이 침수 될 경우 매회 - 1점 |
| **[실격사유] : 실격 시 평가 즉시 중지, 해당종목 0점 처리** |
| ▸ 구조대상(마네킹) 운반 시 '양손 겨드랑이 끌기'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(손목, 목, 다리 등)를 이용한 끌기를 할 경우 1차 경고, 2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격<br>▸ 출발영법 등 정해진 영법 위반 및 구조대상(마네킹)을 놓친 경우 실격<br>▸ 구조대상(마네킹) 운반 시 구조대상의 얼굴이 지속적(3초 이상)으로 침수* 될 경우 1차는 경고, 2차는 실격<br>* 지속적 침수가 아니더라도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평가를 정지시킬 수 있음<br>▸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시험방법 지시 위반 시 실격 |

## □ 수영 100m 능력측정

○ 영법(자유형, 평영, 배영, 접영)의 제한은 없습니다.

* 단, 수영복은 무릎 위까지 오는 수영복이나 사각·삼각 수영복에 한해 허용하며, 여성 수영복 역시 동일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. (부력 수영복 금지)

○ 6명씩 1개 조로 출발하며, 물에 입수한 상태에서 벽을 차며 출발합니다. 단, 사정에 의해 출발대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.

* 출발 인원 수는 당일 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○ 출발은 '준비'구령 다음에 '호각 1회(삐)' 신호와 함께 출발합니다.

* 레인마다 진행요원이 출발지점과 반환지점에 각각 서서 지정된 레인에 대해 출발지점에서 계측하고 반환지점에서 터치 확인

○ 부정 출발신호는 연속된 호각신호(삐-삐-삐-)로 중지하고, 중간에 걸릴 수 있는 줄을 내려 중지 후 다시 출발합니다.

○ 부정출발을 2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.

○ 출발 시 잠영은 출발지점부터 15m이내로 제한하고 50m지점 턴 방법은 제한은 없으나, 반드시 반환점을 터치하여야 합니다.

○ 반환점(50m)을 완전히 터치하고 돌아서 종료지점에 손으로 터치하는 순간까지의 기록을 측정합니다.

**[실격사유] : 실격은 해당종목 0점 처리**

- 부정출발을 2회 실시한 경우 실격처리
- 출발지점부터 15m 이상을 잠영으로 수영할 경우 실격처리
- 50m반환점을 터치하지 않았을 경우는 실격처리
- 출발 후 고의로 레인을 잡거나, 신체의 일부가 바닥에 닿을 경우 실격처리
- 정해진 레인에서 수영하여야 하며 레인을 이탈하거나 타인을 고의로 방해하면 실격처리
  * 타인의 방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레인을 잡거나 발이 바닥에 닿은 경우는 재측정 可

## 6. EOD(폭발물처리) 분야 평가

### □ 평가 항목

○ 평가는 체력·수영·잠수 능력 평가 및 기능실기로 이루어지며, 응시자는 모든 시험과정*에 응시하여야 함

* 시험 순서 : 오전2km 달리기 → 기능실기 → 오후잠수장비 탈·부착 → 100m 수영

○ **체력(육상 14점)**은 「2km 달리기」로 평가하며, 구조 및 전술 분야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은 동일함

○ 기능실기 평가(60점)

| 구 분 | 내 용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기능실기 (60점) | 제1과정 | ▸ 성능시험(구술) | 20점 |
| | 제2과정 | ▸ 기폭, 약폭 제작시험 | 10점 |
| | 제3과정 | ▸ 결선작업 및 폭파 | 20점 |
| | 제4과정 | ▸ 화약류 폐기(구술) | 10점 |

※ 기능실기 시 트레이닝복 등 가벼운 복장도 무방함

○ **수영능력(13점)과 잠수능력(13점)**은 「100m 수영, 수중 잠수장비 탈·부착」으로 평가하며, 구조 및 전술 분야와 평가방법, 평가기준은 동일함

○ 응시자는 시험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해진 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
○ 모든 시험기는 실제 작동하는 기기들이므로 조작순서에 맞게 작동하고 충격 등에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.

○ 주어진 시험 재료는 평가 종료 후 시험관계자에게 전량 반납해야 합니다.